

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조항 및 내용변경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로 명칭변경
- 제1조(목적)의 법조항 변경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신설 (안 제2조4항)
- 각 조문의 민간유치를 민간투자자로 함

□ 검토보고

-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제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,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
-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시행령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 및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-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현행 조례 제2조에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,

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

제2조(구성) ③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과 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기획실장으로 하고,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제2조(구성) ③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시의회의원,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

-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간사를 기획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현재 업무조정 관계로 민자유치사업을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바, 이관이 확실하다면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교류협력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